

소 장

원고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가양동

대표이사 이 ○○

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임○○, 하○○, 정○○, 박○○,

박○○, 양○○, 손○○ [100-714]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피고 박○○ 외 249인

(별지 피고 명단의 기재와 같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 · 피고의 지위

원고는 전분당 등 식료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서울 강서구 가양1동 소재 가양동 전분당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서울 가양동 소재 도시개발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2. 피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은 원고의 위 가양동 전분당 공장에서 지속적으로 연탄가스 냄새와 비슷한 냄새, 시궁창냄새와 비슷한 냄새, 고무타는 냄새, 인분냄새와 비슷한 냄새 등을 배출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1. 12. 24. 피고 1인당 금1,000,000원(피고들의 요구금액 합계 금250,000,000원)의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3. 그러나 원고의 가양동 전분당 공장에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악취가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가) 위 공장의 공정 및 생산제품

위 가양동 전분당 공장은 옥수수를 습식 분쇄하여(물에 불렸다가 파쇄하는 것을 말함) 옥피(옥수수 알갱이의 껍질), 배아(옥수수 알갱이안의 씨눈), 구루텐(옥수수 알갱이의 껍질 안쪽에 있는 황색의 단백질층), 전분(옥수수 알갱이 속에 있는 흰색의 전분부분) 등으로 분리한 다음 옥피와 구루텐은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하고, 배아는 옥수수 기름의 원료로 사용하며, 전분은 전분액을 탈수 및 건조하는 공정을 거쳐 추출하고, 전분을 액화한 후 당화, 여과, 탈색, 이오, 농축 공정을 통하여 물엿, 과당, 포도당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갑제2호 증의 1 내지 3 참조).

나) 이 공정에서는 악취나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위 가양동 공장은 옥수수 알갱이를 물에 불려 이를 3-4조각으로 부수고(이 과정에서 배아가 분리됨), 이를 다시 잘게 갈아 체로 옥피를 걸러낸 후(체분리) 구루텐과 전분의 비중 차이를 이용하여 원심분리를 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은 화학적 공정이 아니라 물리적 공정에 불과하므로 유해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없고, 이 과정에서 옥수수 껍질을 건조하는 사이 약간의 옥수수 찌는 냄새가 날 수는 있으나(옥수수를 찌는 냄새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악취와는 다른 무해한 냄새임) 원고는 이러한 냄새마저 포집하여 보일러에서 연소탈취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가양동 공장에서 시궁창 냄

새, 고무타는 냄새 혹은 인분냄새 등이 발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 원고의 공장은 대기배출물질에 관한 환경오염방지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2002. 3. 12. 원고의 위 가양동 공장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갑제3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항목에 대하여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원고의 위 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악취가 원고의 위 공장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 검사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위 검사결과표를 보면, 시궁창 혹은 대변냄새의 주요성분인 암모니아, 연탄가스 혹은 고무타는 냄새의 주요성분인 일산화물 혹은 황산화물 등의 합성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폐수처리장의 악취저감시설의 냄새도 공기를 20.8배 정도 희석하면 없어질 정도로 극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원고의 위 공장에서 이러한 악취성분의 배출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악취의 근원지가 원고의 공장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 원고는 종래에도 이러한 환경오염방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강서구청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1999. 5. 6. 이래 2001. 8. 8.에 이르기까지 12회에 걸쳐 위 공장의 구내에서 대기환경보존법시행규칙 별표 8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악취의 발생여부를 검사하였으나 원고는 단 한번도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는 것인데(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 원고의 위 공장에서는 위에서 본 대로 옥수수를 찌는 냄새가 날 수 있을 뿐 “사

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는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옥수수를 찌는 냄새를 악취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냄새저감설비를 통과한 이후의 냄새는 관능법과 공기회석법에 의한 검사결과 모두 기준치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악취는 원고의 위 공장에서 배출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갑제4호증의 1 내지 13).

4. 이상과 같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악취의 배출원이 원고의 위 공장이 아님에도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언론이 이를 크게 보도하는 등으로 인해 원고가 부당하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1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접수 및 재정위원과 심사관 지명 알림
2. 갑제1호증의2 재정신청서
3. 갑제1호증의3 선정대표자선정
4. 갑제1호증의4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5. 갑제1호증의5 재정을 구하는 피해액 및 그 산출근거
6. 갑제2호증의1 사업장 개요
7. 갑제2호증의2 옥수수의 구조
8. 갑제2호증의3 생산공정도
9. 갑제3호증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통보
10. 갑제4호증의1 행정기관의 악취측정결과 집계표
11. 갑제4호증의2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회보
12. 갑제4호증의3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회보
13. 갑제4호증의4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회보
14. 갑제4호증의5 대형배출업소 특별합동단속 결과 통보

15. 갑제4호증의6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회보
16. 갑제4호증의7 대기환경오염도 검사결과 통보
17. 갑제4호증의8 시민생활불편에 따른 행정지도 및 지도·점검결과 통보
18. 갑제4호증의9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회보
19. 갑제4호증의10 대형배출업소 특별합동단속 결과 통보
20. 갑제4호증의11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회보
21. 갑제4호증의12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회보 및 중간통보
22. 갑제4호증의13 악취 중점관리업소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보고(회보)

그 외는 구두 변론시 필요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참 고 자 료

1. 참고자료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2. 참고자료2 악취방지대책

첨 부 서 류

1. 소장부분 250통
2. 범인등기부등본 1통
3. 위임장 1통
4. 납부서 1통

2002. 3.

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별 지 목 록

(채무의 표시)

원고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1동 소재 가양동 전분당 공장에서 생활악취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금1,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

- 이 상 -